#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81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 김우영·김문수·송재봉

박민규・윤종군・김 윤

이재강 · 김남희 · 최민희

양문석 · 노종면 · 황정아

정동영 · 조인철 · 박해철

채현일 • 박주민 • 이정헌

김 현 • 한민수 • 조계원

김성환 • 이훈기 • 이광희

임미애 의원(25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 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 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 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 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 적 절차를 도입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 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9조제2항).
- 나.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여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 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 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 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공사 소속 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장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라.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 니함(안 제13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 마.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 바.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
- 사. 이사 및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5조의2 신 설).
- 아. 이사 또는 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회의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받아 임명"을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은 사장의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임명제청된 자가 제1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13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아니하면 임명제청 당시 사장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여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절차를 통한 평가위원 모집 등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가 사장후보자 를 임명제청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인건비 등 운영비용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의3(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 2.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2조의4(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 대상 사장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 위원회 구성 다음 날까지 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장후보자(이하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해당 사장후보자가 제 출한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는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 ⑤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를 평가할 때에는 이사회가 제시하는 사장 임명제청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 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 3. 정치적 중립성
- 4. 방송 관련 전문성
-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⑥ 평가위원회는 사장의 임기만료일 50일 전까지 각 평가대상 사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를 대 상으로 면접심사를 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평가위원회가 제출 한 평가점수와 합산한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이 경우 각 후 보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점수를 최종 평가점수의 100분의 7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이사회는 제7항에 따른 최종 평가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최종 사장후보자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⑨ 제7항에 따른 최종 평가점수의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사장후보자를 결정한다.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상 사장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방법 및 효력, 최종 사장후보자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을 "이사장을 포함한"으로, "9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 "개인"을 "공사,임원 및 이사를 제외한 개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9항)중 "임기 및 결격사유에"를 "임기에"로, "제10조와 제11조를"을 "제10조를"로하다.

- ③ 이사는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대통령은 제1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13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 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4. 공사 소속 직원이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 5.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는 사람 2명
- 6.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는 자는 이사 추천을 위한 기구의 구성, 공개절차를 통한 이사 후보 모집, 심사절차, 의견수렴 등이사 추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투표의 방식(전자투표 등을 포함한다), 선거인 명부, 투표일정, 투표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장의 면직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 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공사 홈페이

- 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 ② 제10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있다.
-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교육학·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 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교육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 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교육·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교육·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제13조의3(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 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공사 외에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이사,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이사 임명 전 5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사람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다.

- 5의2. 사장의 임면제청
- 5의3.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 12.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이사 및 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이사 및 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이사 및 사장은 이 법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 3.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 대한 경우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 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사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3조제11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사람
- 4.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사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 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공사의 이사회・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임명되어야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임원은 이 법에 따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임원) ① (생 략)                  |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
| ② 사장은 <u>방송통신위원회 위</u>           | ② <u>제13조의2 각 호의</u>         |
|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u>를 받아 임명</u> 한다. < <u>후단 신</u> | 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              |
| <u>설&gt;</u>                     | <u>령이 임면</u> <u>이 경우 이사회</u> |
|                                  | 가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때에              |
|                                  | 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
|                                  | 제시하여야 한다.                    |
| ③ 감사는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 ③이사회의 제청으로                   |
| 임명한다.                            |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
| ④ 부사장은 사장이 <u>임명한다</u> .         | ④임명하되 <u>,</u>               |
|                                  |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u> &lt;신 설&gt;</u>              | ⑤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사             |
|                                  | <u>장 임명제청은 사장의 임기만</u>       |
|                                  | 료일 4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 <u>&lt;신 설&gt;</u>               | ⑥ 제2항에 따라 임명제청된              |
|                                  | 자가 제13조의2에 따른 자격요            |
|                                  | 건을 갖추고 제13조의3에 따른            |
|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
|                                  | 대통령이 임명하지 아니하면               |
|                                  | 임명제청 당시 사장의 임기만              |
|                                  | 료일 다음 날 임명된 것으로              |
|                                  | <u> 간주한다.</u>                |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부 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 년으로 <u>한다</u>.

#### ②・③ (생략)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6.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신 설>

| 세10조(임원의 임기) ①       |
|----------------------|
|                      |
| <u>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u> |
| 여 연임할 수 있다.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세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
| <u>.</u>             |
|                      |

- 1. ~ 6. (현행과 같음)
- 7.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 회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의 이사 또는 임·직 원으로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2(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 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 여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 상 200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절차를 통한 평가위원 모집 등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보장하 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 가 사장후보자를 임명제청 의 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 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①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 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 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인건 비 등 운영비용 지원을 포함한 다)을 하여야 한다.

<신 <u>설></u>

- 8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행정적·재정 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의3(평가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 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 지 않은 사람
  - 2.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2조의4(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 대상 사장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다음 날까지 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장후보

자(이하 "평가대상 사장후보자" 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해당 사장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위 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는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 ⑤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 사 장후보자를 평가할 때에는 이 사회가 제시하는 사장 임명제 청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공 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 3. 정치적 중립성
- 4. 방송 관련 전문성
-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⑥평가위원회는 사장의 임기만료일50일전까지 각 평가대상사장후보자에 대한 평가점

<u>수</u>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u>야 한다.</u>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점수와합산한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한다. 이 경우 각 후보자에대하여 평가위원회가 제출한평가점수를 최종 평가점수의 100분의 7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이사회는 제7항에 따른 최종 평가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최종 사장후보자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13조제 8항 본문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⑨ 제7항에 따른 최종 평가점
   수의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점
   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사장후
   보자를 결정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 ② -----이사장을 포함한-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상 사 장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방법 및 효력, 최종 사장후보자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13명------

③ 이사는 제13조의2에 해당하 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서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 성, 지역 및 사회 각 분야 대표 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 1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 추고 제13조의3에 따른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 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 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

   명.
   이
   경우
   국회
   의결을
   거

   쳐야
   한다.
- 2.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미디어 관련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방송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하는 사람 1명
- 4. 공사 소속 직원이 투표를 실 시하여 다수득표순으로 추천 하는 사람 3명
- 5.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는 사 람 2명
- 6.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이사를

<신 설>

#### ④·⑤ (생 략)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u>서 신설></u>

## ⑦ (생략)

-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생략)

| 추천하는 자는 이사 추천을 위                  |
|-----------------------------------|
| 한 기구의 구성, 공개절차를 통                 |
| 한 이사 후보 모집, 심사절차                  |
| 의견수렴 등 이사 추천 절차의                  |
|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
|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투표의                  |
| 방식(전자투표 등을 포함한다)                  |
| 선거인 명부, 투표일정, 투표관                 |
|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
| <u>가 정한다.</u>                     |
| <u>⑥</u> ⋅ <u>⑦</u> (현행 제4항 및 제5항 |
| 과 같음)                             |
| <u>®</u>                          |
| <u>다만</u>                         |
|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장의 면                  |
|                                   |

직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u>⑨</u> (현행 제7항과 같음)
- $\bigcirc$

- 1. (현행과 같음)
- 2. 공개하면 <u>개인</u>·법인 및 단 2. -----<u>공사, 임원 및 이</u>

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 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생 략) <신 설>

<신 설>

 ⑨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 사를 제외한 | 개인 |
|--------|----|
|        |    |
|        |    |
|        |    |

- 3. (현행과 같음)
- ①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 여야 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공 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한다.
- ① 제10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③ -----<u>임기에</u>-----<u>제</u> 10조를-----
- 제13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 다.
  - 1. 교육학 · 방송학 · 언론학 · 전

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 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교육 관 런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 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 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사람
- 3. 교육・방송・언론 관련 단체 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 람
- 4. 교육・방송・언론 분야의 이

   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경력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되는 사람
- 제13조의3(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 <u>니한 사람</u>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 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 나한 사람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공사 외에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또는 종합편성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 5. (생 략)

<신 설>

<u><신 설></u>

6. ~ 11. (생 략)

<신 설>

12. (생략)

② (생 략)

<신 설>

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 이사,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이사 임명 전 5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 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

\_\_\_\_\_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사장의 임면제청

5의3.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 장의 임명동의

6. ~ 11. (현행과 같음)

12.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u>13.</u>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이사 및 임원의 직무 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이사 및 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로부터 부당

- 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 다.
- ② 이사 및 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이사 및 사장은 이 법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 3. 「방송법」 제13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

제27조(벌칙) (생 략)

<신 설>

 률에 따른 공사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제27조(벌칙)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회 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13조제11항을 위반하여 회 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사람
  - 4.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람